

# 어선 [ ]개조 [ ]개조발주 허가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 $\sqrt{\quad}$ 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접수번호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자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| 해양수산부: 4일<br>시·군·구: 3일 |  |  |  |
| 소유자  | 성명(법인명)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생년월일<br>(법인등록번호)     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| 주소<br><br>(전화번호 )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개조어선 | 어선번호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| 어선의 명칭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선 적 항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개조 전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조 후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| 주요치수<br>(m)              |      | 길이:      너비:      깊이: |  |  | 길이:      너비:      깊이: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| 총 톤 수                    |      | 톤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톤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| 추진기관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기관      마력      대     |  |  | 기관      마력      대    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| 구조·설비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| 어업의 종류                   |      | 어업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업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추진계획 | 착공예정일<br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준공예정일<br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| 개조장소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조선소명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개조사유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
「어선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의  
호  
의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     귀하  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|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없음 | 수수료<br>「어선법 시행규칙」 별표<br>20 또는 조례에 따름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유의사항

1. 벌칙규정

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2. 어선의 개조·개조발주 허가기관

- 가. 해양수산부장관
- 1)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
  - 2)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,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
  - 3)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
  - 4)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·시험·조사 또는 지도·감독에 사용할 어선
- 나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-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

3. 그 밖의 유의사항

- 가.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1) 어선의 주요치수(길이·너비·깊이)를 변경하는 경우
  - 2)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
  - 3)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
- 나.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·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.
- 다.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